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64 발의연월일: 2025. 2. 27.

발 의 자:이수진・김문수・송옥주

김준혁 · 김정호 · 허성무

박홍배 · 용혜인 · 서미화

김현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조에 따르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나, 기 수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음. 또한, 제27조에 따르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그러나 내란의 죄, 외환의 죄는 국가체제의 전복과 연결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해당 범죄에 대한 실행의 고의 및 실행 행위가 있었다면 행위의 종료 또는 결과의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 제87조제2호의 '모의 참여'와 관련하여 국무위원, 군지 위관 등 국가를 수호할 책무를 가진 자가 내란 모의를 알았거나 모의 현장에 참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방조·방치한 경우에도 모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내란죄, 외환죄가 국가체제의 전복 및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 등을 정비하고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87조제2호 등).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호 전단 중 "임무에"를 "임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위공직자가 모의를 방조·방 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로,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89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5조제2항 및 제27조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조제1항 본문 중 "3年 以上의"를 "5년 이상의"로 한다. 제100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5조제2항 및 제27조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	제87조(내란)
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	2
나 그 밖의 중요한 <u>임무에</u> 종	임무(「고
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	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u>년</u>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호의 고위공직자가 모의를 방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조・방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u>에</u>
	<u>10년</u>
	,,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3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u>5년</u>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u> 10년</u>
처한다.	
第89條(未遂犯) 前2條의 未遂犯은	第89條(未遂犯)

處罰한다. <후단 신설>

第90條(豫備, 陰謀, 煽動, 宣傳)
① 第87條 또는 第88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
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
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② (생 략)

第100條(未遂犯) 前8條의 未遂犯 은 處罰한다. <<u>후단 신설></u>

<u>이 경우 제25조제2</u>
항 및 제27조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90條(豫備, 陰謀, 煽動, 宣傳)
①
<u>5년 이상의</u>
,
② (현행과 같음)
第100條(未遂犯)
<u>이 경우 제25</u> 조제2
항 및 제27조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